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 김준혁의원·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67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제정의 필요성	5
2. 조문의 구성체계	11
3. 조문별 검토	14
가.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설립(안 제1조~제6조)	14
나. 임원 및 이사회(안 제7조~제12조)	20
다. 운영재원(출연금, 이용료·수수료 징수, 기부금 등)(안 제13조~제16조)	24
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17조)	28
마. 사업연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보고 등(안 제18조~제20조)	32
바. 지도·감독 등(안 제21조)	34
사. 인력의 파견요청(안 제22조)	36
아. 비밀엄수의무 및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안 제23조~제24조)	38
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26조)	41
차. 부칙	4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의원·김대식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6.
3. 회부연월일 :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문화·역사,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만 명을 넘은 뒤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음. 높아진 국제 교류·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육 분야의 질적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경직된 조직·인사 운영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 등으로 국제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배치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글로벌 전문가 육성이 어려운 구조임. 또한 글로벌 교육 선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화가 부족해 선진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화가 정

체되어 있음.

이에 국립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하고, 초·중등, 고등교육 전반의 글로벌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으로서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고등교육 해외진출 등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주요사업을 정함(안 제6조).

다.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임원의 임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라.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 이용료·수수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정함(안 제13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요구와 개선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재단은 사업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재단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도용 금지, 한국국제교육재단 명칭 사용 금지를 정함(안 제23조, 제24조).

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안 부칙 제1조).

차.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설립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위원장: 교육부차관)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국립국제교육원이 소재한 부동산은 한국국제교육재단이 무상승계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한국국제교육재단에 무상양여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파.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재단의 이사장은 종전 국립국제교육원장 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가 선임하도록 함(안 부칙 제7조).

하. 책임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사람과 재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을 확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부칙 제8조, 제9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의 필요성

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환경에 대한 탄력적 운용
한계

국립국제교육원은 구성원이 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으로 조직 및 인사 운영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협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 이후 다른 부처 또는 부서로 전보되는바,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의 배치 및 육성이 곤란한 것으로 보임.

< 국립국제교육원 팀장급 이상 보직자 주요 현황(2025년 1월 기준) >

구분	현황	비율
현보직 3년 이상	3명/14명	21.4%
국립국제교육원 전입 3년 이상	8명/14명	57.1%
박사학위 소지자	2명/14명	14.3%

자료: 교육부 제공

유사기관과 비교하더라도 국립국제교육원은 인적 구성이 기관 전입 전 일반·교육행정을 담당하던 공무원과 교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문성 함양 및 노하우 축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 기관과의 비교 >

	국립국제교육원	유사기관(KOICA, KF 등)
입 직	▶ 공무원, 학교(교사) 등 ※ 공무원 공채, 교원임용시험	▶ (입직 준비) 글로벌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외 활동 ※ 국제기구 인턴, 해외봉사 등 ▶ (채용) 글로벌 직무와 연관성 높은 채용 ※ 영어 작문/면접, 경험 기반 면접, 기관 직무 관련 논술 등
보 직 경 로	▶ 기관 전입 전 정부 기관에서 일반·교육행정 담당 ※ 교육부, 소속기관, 타 부처, 교육청, 중·고등학교, 대학 등	▶ 글로벌 업무에 특화된 기관 보직경로에 따라 글로벌 인재로 성장 ※ 해당 기관 내에서 입직~상위 직급까지 단계별 성장, 해외사무소 근무 기회 등
특 징	▶ 일반 행정가(generalist) 채용 ※ 순환 보직 등 ▶ 전문성·노하우 축적 한계	▶ 전문가(specialist) 채용 ※ 지역 전문가, 이중언어 구사자 등 ▶ 조직 내 성장·발전 경로 제공

자료: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은 현재 관리 업무는 공무원이 수행하고, 글로벌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비공무원(공무직) 행정원¹⁾이 수행하고 있는바, 체계적인 글로벌 전문가 육성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나. 개별 사업 위주의 운영에 따른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한계

국립국제교육원은 국가 및 지역별 동향 및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조사·분석 기능 없이 단발적인 사업·행사 위주로 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고,

1) [예시-'24년 글로벌역량지원센터 행정원 채용] ① 요건: 지정 어학성적 이상 혹은 영어권 국가 2년 이상 거주자, ② 근무조건: 월 2,379,230원(교육부 제공)

유학·장학금·생활·취업 등 정보를 담은 한국유학종합정보시스템(Study in Korea)을 운영중이나, 유학생 맞춤형 정보 제공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취업 정보의 대부분이 고용24 혹은 민간 고용정보 업체의 단순 연계 정보로, 유학생 전공·커리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 제공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²⁾.

또한, 유학생 유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GKS 사업으로,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로 운영되는 등 다수의 기관이 글로벌 교육 업무를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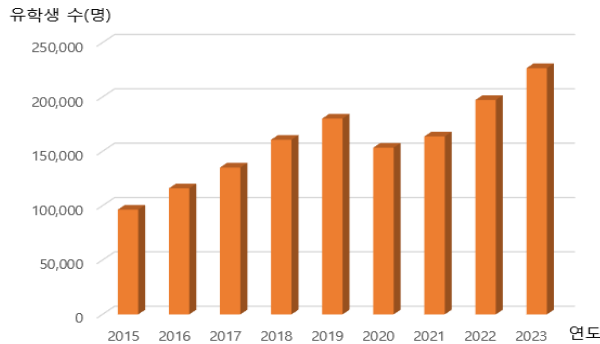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원 등 국외교육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현지 협력 수요 발굴에 한계가 있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연도별 유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 출신 위주(93.0%)로 실질적인 인적 교류 확대는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2) 교육부 자료 제공

< 연도별 유학생 수 추이 >



< 출신 지역별 비중(2023년 기준) >

아시아	93.0%
유럽	4.0%
아프리카	1.5%
미주	1.4%
오세아니아	0.1%
기타	0.003%

자료: 교육부 제공(법무부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통계」)

QS 세계 대학 랭킹 결과, 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전체점수 대비 국제화 지표 결과(특히, 외국교원 및 외국학생 비율)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외국과의 인적 교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5 QS 세계 대학 랭킹 결과 (단위 : 환산점수) >

대학명(순위)	전체점수	국제연구 네트워크	외국교원 비율	외국학생 비율
서울대(31)	82.3	73.2	10.5	16.9
카이스트(53)	75.7	46.8	21.1	10.9
연세대(56)	72.9	78.7	20.7	51.2
고려대(67)	69	65.7	15.2	45.7

자료: 교육부 제공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으로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기업의 투자·생산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내국인 고용 위축을 완화시키거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바³⁾,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하에서, 지역의 글로벌 인재양성, 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은 국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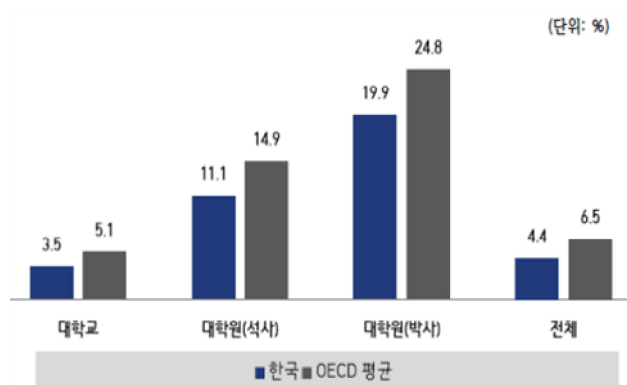
3)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4. 9.)

쟁력과 직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RISE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체의 인재양성 생태계를 활용한 지역 특성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영국의 경우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명 유치를 목표로 연간 350억 파운드를 투입할 예정이고, 프랑스의 경우 2027년까지 유학생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33년까지 유학생 38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⁴⁾, 현재 주요국가의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글로벌 교육의 경쟁력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전략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2022년) >



자료: 교육부 제공(OECD 교육지표 2024)

4) 교육부 제공

라. 교육부 의견

교육부는 제정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대학, 교육청, 재외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글로벌 교육 교류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마. 소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 주요국가의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생의 유치 실적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출신 지역도 아시아 국가 위주로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교육의 경쟁력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전략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국립국제교육원을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환경에 대한 탄력적 운용에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사업 위주의 운영에 따른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글로벌 교육 선도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정립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2. 조문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국국제교육재단법’이라 함)」이라는 제명 하에 2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별도의 장 구분은 없으나 조항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총칙 성격의 조항, 기관 구성 관련 조항, 회계·예결산 관련 조항, 보칙 및 벌칙 관련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특수법인의 설립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설립에 관한 목적을 제1조에서 규정하고, 법인격·기능·임원·이사회·사업 범위·권한·책임·의무·지원제도 및 벌칙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정방식으로 보이는바⁵⁾, 동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특수법인 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문의 구성체계>

구분	조 문	구분	조 문
총칙 성격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설립 등) 제4조(부속기관) 제5조(정관) 제6조(사업)	보칙 관련	제21조(지도·감독 등) 제22조(인력의 파견요청) 제23조(비밀엄수의무) 제2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530p, 국회사무처

기관 관련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직무 등) 제9조(임원의 임기) 제10조(이사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2조(겸직제한)	별칙 관련	제27조(별칙) 제28조(과태료)
예산 결산 관련	제13조(운영재원) 제14조(출연금) 제15조(이용료·수수료 징수) 제16조(기부금 등) 제1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8조(사업연도)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제20조(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보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설립비용)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6조(설립당시의 예산) 제7조(설립당시의 임원의 임명) 제8조(직원의 임용 특례) 제9조(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입법례 - 특수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구성체계>

제명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구성체계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0조(사업)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사채의 발행) 제13조(차입금) 제14조(상환 보증) 제15조(보조금) 제16조(감독) 제17조(토지의 수용·사용)	제1조(목적) 제2조(법인) 제3조(설립) 제3조의2(부설기관)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임원 등)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 제10조(직원의 임명) 제11조(출연금) 제12조(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3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 사업 관리)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검사 등)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벌칙) 제20조(과태료)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9조(「민법」의 준용)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	---	--

자료: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531p, 국회사무처

3. 조문별 검토

가.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설립(안 제1조~제6조)

제정안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제1조), 법인격(제2조), 설립(제3조), 부속기관(제4조), 정관(제5조), 사업(제6조) 등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국제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교육 분야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부속기관) ① 재단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소 등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부속기관의 설치 및 부속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법령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4. 주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육 교류 협력 지원
2.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국제장학·국제교류 지원
3. 외국어 공교육 지원 및 특수외국어 지원
4. 고등교육 해외 진출 및 인적교류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관리
6. 한국어능력시험의 개발·운영 및 연구
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지원
8. 위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정안은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부칙(안) 제4조 및 제5조의 승계 규정⁶⁾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의 재산·권리·의무를 승계

6) 「부칙(안)」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소재한 토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번길 35,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은 재단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립국제교육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제1항에 따른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재

한 법정 법인으로서 한국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임.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2001년 1월 지정)⁷⁾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3항⁸⁾에 따라 설치되어 TOPIK, GKS 기획 및 운영,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립국제교육원 기관 현황>

- (기관 성격)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01.1.~)
- (조직·정원 / 예산) 원장, 3부 11팀, 공무원 73명 / 총 183,894백만원('25년)
- (주요 기능) TOPIK, GKS 기획·운영, 유학생 유치·관리 등

자료: 교육부 제공

1) 정관

제정안 제5조는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변경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定款)으로 정한

단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명의를 재단의 명의로 본다.

7) (연혁) 서울대 소속 재외국민교육연구소('62.3), 재외국민교육원('77.3) → 교육부 소속 국제교육진흥원('92.3), 국립국제교육원('08.7.)

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정관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가 정해짐을 규정하고 있고⁹⁾,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규정한 이후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¹⁰⁾, 동 제정안도 제2조에서 법인격을 규정한 이후 제5조에서 정관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음.

<입법례 - 특수법인의 정관>

제명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정관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한편 제정안은 정관의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 변경 권한의 주체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9)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0)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536p, 국회사무처

않고 있으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바, 정관의 변경은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고, 동북아역사재단법, 한국장학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모두 정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¹⁾, 동 제정안도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법에서 정관 변경 권한의 주체를 ‘재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

제정안 제6조는 한국국제교육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재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¹²⁾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법인)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은 현재 ①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② 국제교육 교류협력, ③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④ 국비 해외유

1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학 지원, ⑤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⑥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⑦ 외국어 공교육 지원, ⑧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¹³⁾, 교육부는 한국국제교육재단에서 위 업무들을 모두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¹⁴⁾.

<한국국제교육재단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 관련 규정 비교>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국제교육재단(제정안)
-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 국제교육 교류 협력 -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 국비 해외유학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 외국어 공교육 지원 -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지원 - 국제교육 교류 협력 지원 -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국제장학·국제교류 지원 - 고등교육 해외 진출 및 인적교류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관리 - 한국어능력시험의 개발·운영 및 연구 - 외국어 공교육 지원 및 특수외국어 지원 - 위 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1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립국제교육원의 사무 중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의 경우 제정안 제6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는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포함되어 수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나. 임원 및 이사회(안 제7조~제12조)

제정안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임원의 임면, 직무,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설치, 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3. 제4조의 부속기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 4.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5. 정관의 변경 6.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제19조의 사업계획서 및 제20조의 실적보고서
8. 기부금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및 이사회가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겸직제한) ① 재단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상임 임원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1) 임원의 직무 등

동 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로 이사장을 두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인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위와 같은 직무대행 외에 대표자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예가 있는

바15), 제정안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2) 임원의 임기

제정안 제9조제2항은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원의 임기조항에서 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¹⁶⁾, 한국국제교육재단의 모든 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이사회

특수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16)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541p, 국회사무처

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 정원,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 구체적으로 법에서 두거나, 하위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¹⁷⁾,

동 제정안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 정원,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면서, 의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7)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537p, 국회사무처

다. 운영재원(출연금, 이용료·수수료 징수, 기부금 등)(안 제13조~제16조)

제정안은 재단의 운영재원으로 ① 정부의 출연금, ② 재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이용료, 수수료 및 실비, ③ 그 밖의 수입금(기부금품)을 규정하였음.

제 정 안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15조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3.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출연금)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용료·수수료 징수) 재단은 제6조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료,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기부금 등)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기부금품법」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을 제3조에서 열거하면서¹⁸⁾,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 등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¹⁹⁾,

「기부금품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²⁰⁾.

그러나 제정안의 경우 ①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며, ③ 상임 임원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

18) 「기부금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9)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0)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고, ④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⑤ 이사회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⑥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요구와 개선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⑦ 재단은 사업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국제교육재단에 대하여 교육부의 실직적인 지휘·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국제교육재단이 국가의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동 제정안의 수정을 통하여 접수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²¹⁾.

<참조 입법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동 제정안의

21)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조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법」이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기탁
하는 금품은 접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17조)

제정안은 재단의 설립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양여,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제정안 제17조제2항은 제1항과 달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제17조에서 국가가 국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하여 「국유재

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부, 양여,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인바, 이와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특례는 동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타법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²²⁾, 동법 제5조의2에서는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²³⁾, 위 제정안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을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참조 입법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6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3	「사립학교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9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 기 사용허가등	2025. 12. 31.
19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물품의 양여 및 무상대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조항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마. 사업연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보고 등(안 제18조~제20조)

제정안은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보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 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 의 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은 그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국가적 사무를 수행하고 운영재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주무기관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²⁴⁾, 동 제정안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임.

다만,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인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승인까지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2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546p, 국회사무처

요할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감독 등(안 제21조)

제정안은 재단의 업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1조(지도·감독 등)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요구와 개선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무기관이 해당 특수법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업무·회계·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²⁵⁾, 제정안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임.

<참조 입법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법」

제49조의6(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7(출입·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5)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546p, 국회사무처

「동북아역사재단법」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인력의 파견요청(안 제22조)

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한국국제교육재단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국국제교육재단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2조(인력의 파견요청) ① 재단은 사업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를 “공공기관 등”으로 약칭하는데,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제 지침서에서는 의미 혼란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등’을 붙여 쓰도록 하고 있는바²⁶⁾, “공공기관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6)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33p, 국회사무처

※ “A·B·C·····”를 약칭할 경우에는 “A·B·C·····” 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A등”으로 약칭한다. 이 경우 ‘등’은 A에 붙여 쓰도록 한다. “A∨등”으로 약칭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A∨등”이 “A·B·C·····”를 지칭하는 약칭된 “A∨등”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하나의 예시로서 A가 사용된 “A∨등”의 의미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아. 비밀엄수의무 및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안 제23조~제24조)

제정안은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임직원 등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자 하며, 한국국제교육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3조(비밀엄수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육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1) 비밀엄수의무

제정안은 재단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제22조에서 인력과견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파견된 인력의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밀엄수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에 대해서도 비밀엄수의무 부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정안은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북아역사재단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형법」과 「동북아역사재단법」보다 가중해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의 특성 및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동북아역사재단법」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동일명칭 사용금지

제정안은 한국국제교육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명칭의 사용만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명칭에 한해서만 사용이 금지되므로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해당 사안에 있어 유사명칭의 사용에 따른 피해가 중대하여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유사명칭까지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가 동일명칭 사용만 금지하는 입법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여부는 금지할 공익상의 요청과 명칭을 선택하고 사용할 자유에 대한 제한 간 적절한 형량이나 실제 오인·혼동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²⁷⁾.

<참조 입법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장학재단법」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7)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743p, 국회사무처

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26조)

제정안은 한국국제교육재단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은 재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제정안은 제22조에서 인력파견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파견된 인력의 경우 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에 대해서도 위 「형법」 조항에 대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차.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재단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설립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소재한 토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번길 35,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은 재단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립국제교육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제1항에 따른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명의를 재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설립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설립 당시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재단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설립당시의 임원의 임명) 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재단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명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위원회가 선임한다.

제8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재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재단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에 재직 중인 자(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재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을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을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재단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재단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9조(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정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재단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재단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1) 시행일

부칙(안) 제1조는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안) 제2조(설립준비), 제3조(설립비용) 및 제10조(예산

편성에 관한 특례)는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부칙(안) 제2조는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재단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부칙(안) 제3조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안) 제10조는 재단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재단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설립준비행위

법인이 설립되려면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이 행위가 종료되어야 법인이 설립된 것이므로 법률 시행일에 특수법인이 설립되도록 하려면 시행일 전에 이러한 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 절차 및 내용 등을 준비행위 규정에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위촉과 관련된 절차, 정관 작성 및 주무관청의 인가, 설립 등기 후 신설되는 조직으로의 사무 인계, 설립위원회 해산 또는 설립위원 해촉,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²⁸⁾,

28)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842p, 국회사무처

부칙(안) 제2조(설립준비) 및 제3조(설립비용)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립국제교육원 승계

제안이유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제정안은 국립국제교육원을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의 재산·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부칙(안)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및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승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부칙(안) 제10조는 재단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재단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 제19조²⁹⁾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서 외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되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9) 「한국국제교육재단법」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